

영광군 방재성능목표 공표

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「영광군 방재성능목표」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7일



1. 목 적 :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.
2. 근 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·운영)
3. 방재성능목표

지역명	강우지속기간		
	1시간	2시간	3시간
영광군	85mm	117mm	138mm

4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영) 대상

- 대상지역 :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(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)
- 대상시설
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
 - 「국토계획법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

-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
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수펌프장
 - 「하수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, 빗물펌프장
 - 「도로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배수로 및 길도랑
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
 - 「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고지배수로

5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

-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
- 하수관거, 저류지,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 성능 평가 시 적용
-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
-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
 -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, RRL 모형, ILLUDAS 모형,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

6.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: 공고일 부터